

##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신청범위	(필요시 별지 사용)	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</li><li>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, 인력, 시험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</li><li>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</li><li>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서류 1부</li><li>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</li></ol>	수수료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)	

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(국가기술표준원)	→	심사 및 결재 처리기관 (국가기술표준원)	→	지정서 작성 처리기관 (국가기술표준원)	→	지정서 발급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